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16호 2019. 12. 9.(월)

고 시

- 목포 삽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

공 고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9

회람							
----	--	--	--	--	--	--	--

목포시 고시 제2019-222호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목포시 고시 제2019-77호(2019. 4. 15)호로 고시한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제15조의2 규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목 포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 목포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목포조선공업(주)

3. 산업단지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도시환경저해를 초래하는 기존의 공장들을 산단 내로 수용함으로써 집적 이익 도모 및 도시 내 토지효율성 제고.
- 선박건조를 위한 조선소 건설, 조선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나. 사업개요(변경없음)

(1) 개발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민간개발

(2)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금속가공 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3)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단위 : m²)

구분	계	장	도	공원	잡	공유수면 (매립)
기정	217,770.0	173,440.4	25,707.7	3,760.6	9,367.9	5,493.4

(4) 토지 이용 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적(㎡)			비고
	전체	기 준공	공유수면 매립	
합 계	217,770.0	212,276.6	5493.4	목포조선공업(주)
산 업 시 설 용 지	167,346.4	161,853.0	5493.4	
공 장 용 지	167,346.4	161,853.0	5493.4	
지 원 시 설 용 지	10,788.9	10,788.9		
공 동 시 설 부 지	9,619.7	9,619.7		
생활체육 시설부지	361.8	361.8		
가 압 장	807.4	807.4		
녹지용지	13,975.1	13,975.1		
경관녹지	10,214.5	10,214.5		
공원녹지	3,760.6	3,760.6		
공공시설용지	25,659.6	25,659.6		
도 로	24,013.4	24,013.4		
주 차 장	1,646.2	1,646.2		

(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도 로

- 도로총괄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중로	5	1,297	24,013.4	3	946	19,481.4	-	-	-	2	351	4,532.0

- 도로결정조서(변경없음)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면적(㎡)	기점	종점
중로	1	14	20	98	2,149.6	지구계	공장부지 입구
중로	1	43	20	479	9,765.0	중1-14	지구계
중로	1	27	20	369	7,566.8	중1-14	지구계
중로	3	37	12	213	2,716.0	중1-43	해안선
중로	3	38	12	138	1,816.0	중1-27	해안선

○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용수공급량

(단위 : m³)

구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사업지구	963	849	114

- 용수공급원

구 분	공 급	비 고
공급원	목포 지방상수도	963t/일, 200m/m

○ 오·폐수처리(변경없음)

(단위 : m³/일)

구분	계	오수량	폐수량	비고
계	199.924	111.72	88.204	
공 장 용 지	195.924	107.72	88.204	
지원시설용지	4	4	-	

○ 공원, 녹지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계				13,975.1		
기정	녹지	경관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498.0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9,411.5		
기정	녹지	완충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기정	공원	근린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760.6		

○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전력사용량(MWh)	최대부하(kW)
계	13,939	2,540
공 장 용 지	13,383	2,451
지원시설용지	556	89

○ 통신시설(변경없음)

- 여유율 30%를 고려하여 100회선을 한국통신 목포 지사에서 전량 공급

구분	종사인구(인)	산정기준	총소요대수(회선)	비고
계	926		100	
공장용	896	1대/10인	90	
지원시설용	30	1대/3인	10	

○ 주차장 계획(변경없음)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계			1,646.2	-	
기정	노외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4장 일원	823.1	-	
기정	노외주차장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823.1	-	

○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진입도로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정	종점	관리처분 사 항
중로	1	14	20	416	8,467	대로1-6	산단지구계	목포시에 귀 속

4. 사업자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나. 면 적

○ 217,770.0㎡[공유수면 매립확장 5,493.4㎡]

5. 사업 시행기간(변경)

가. 개발기간(변경-목포조선공업 부지확장에 한함)

○ 기 정 : 1995. 12 ~ 2019. 12(공유수면매립 : 2012~2019)

○ 변 경 : 1995. 12 ~ 2020. 12(공유수면매립 : 2012~2020)

6.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1) 목포 삼진일반산업단지 용도지역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217,770.0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17,770.0	100.0	

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번호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20	삼진지구 단위계획구역	목포시 연산동 1282번지 일원	217,770.0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교통시설(변경없음)

○ 도로 결정 총괄조서(변경없음)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5	1,713.0	32,480.4	3	1,362	27,948.4	-	-	-	2	351	4,532.0
중로	5	1,713.0	32,480.4	3	1,362	27,948.4	-	-	-	2	351	4,532.0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5개 노선			1,713.0	32,480.4				-	-	
기정	중로	1	14	20	514.0	10,616.6	지구계	공장입구	도로	-	-	
기정	중로	1	43	20	479.0	9,765.0	중로1-14	지구계	도로	-	-	
기정	중로	1	27	20	369.0	7,566.8	중로1-14	지구계	도로	-	-	
기정	중로	3	38	12	138.0	1,816.0	중로1-27	해안선	도로	-	-	
기정	중로	3	37	12	213.0	2,716.0	중로1-43	해안선	도로	-	-	

(2) 공간시설(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일원	5,411	-	-		삼진일반 산업단지
기정	13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99잡 일원	3,992	-	-		삼진일반 산업단지
기정	14	녹지	완충 녹지	목포시 연산동 1287장 일원	305	-	-		삼진일반 산업단지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9	삼 진	근린 공원	목포시 연산동 1298장 일원	3,830	-	-		삼진일반 산업단지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 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계획총괄(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217,770.0	목포시 연산동 일원	217,770.0	
-	소계		167,346.4		167,346.4	
	A	1	138,477.2	목포시 연산동 1282장 일원	138,477.2	공장용지
		2	26,434.1	목포시 연산동 1297장 일원	26,434.1	공장용지
		3	2,435.1	목포시 연산동 1280-12장 일원	2,435.1	공장용지
-	소계		9,619.7		9,619.7	
	B	1	7,173.7	목포시 연산동 1300장 일원	7,173.7	공동시설
		2	314.6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14.6	공동시설
		3	389.5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89.5	공동시설
		4	1,380.1	목포시 연산동 1282장	1,380.1	공동시설
-	C		807.4	목포시 연산동 1289장	807.4	가압장
-	D		361.8	목포시 연산동 1284장	361.8	생활체육시설
-	E		3,760.6	목포시 연산동 1298장	3,760.6	공원
-	소계		10,214.5		10,214.5	
	F	1	1,214.5	목포시 연산동 1290잡	1,214.5	녹지
		2	801.2	목포시 연산동 1302잡	801.2	녹지
		3	796.9	목포시 연산동 1288잡	796.9	녹지
		4	2,110.3	목포시 연산동 1283-1잡	2,110.3	녹지
		5	498	목포시 연산동 1282장	498	녹지
		6	2,179.8	목포시 연산동 1299잡	2,179.8	녹지
		7	2,308.8	목포시 연산동 1283-2잡	2,308.8	녹지
		8	305	목포시 연산동 1287장	305	녹지
-	소계		1,646.2		1,646.2	
	G		823.1	목포시 연산동 1284장	823.1	주차장
			823.1	목포시 연산동 1282장	823.1	주차장
-	H		24,013.4	목포시 연산동 1303도	24,013.4	도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	A	용도	◦ 권장용도 : 건축법 제2조 2항 제17호의 공장 ◦ 불허용도 : 권장용도 외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4층 이하	
		배 치	◦ 도면참조	
		형 태	-	
		색 채	◦지붕 : 1차색을 지양하고 2,3차색 사용 권장(연한 녹색 및 파란색 계열) ◦벽면: 지붕색과 명도차를 두어 2, 3차색 사용 권장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동일색 사용 지양	
		건축선	◦건축 한계선 : 획지경계선에서 1m이하 이격하여 지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제1종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관련 도면 게재생략.

7. 산업단지 지정 지형도면 고시도 : 관련도면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률』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t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8. 관련도서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목포시 기업유치실(061-270-42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생략)

목포시 공고 제2019-1694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9일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지자체 출입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과도한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대한 포괄적 조항을 수정
- 기계식주차장 안전불감증으로 운전자 이용기피 및 실제 사용률이 저조한 것은 물론이고 시설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위험 빈번
-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주차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 마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 제14조, 제14조의2, 「목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6. 관련부서 의견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9. ~ 12. 30.(22일간)

9.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530-701,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교통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교통행정과(☎ 061-270-3683, FAX 270-3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 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3항에 제6호를 신설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를 “법 제19 조의13제6항에 따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기타 시장이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관용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60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 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③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신 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의 산정에 있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대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이하 : 자주식주차장 설치 2. 별표2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20대 초과 : 법정 설치대수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소수점이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 <u>제4항</u> 에 따라 -----	제14조의2(기계식 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 <u>제6항</u> 에 따라 -----

현행

[별표 2]<개정 2012.6.11, 2017.10.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 정원 15인당 1대(정원/15인) ○관람장 :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개정안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설치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제6조제1항제4호 및 「전라남도 건축조례」에서 정한 전통한옥 밀집지역내의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 이하에서 같다.)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차로 및 주차단위구획 등 자동차가 주차하기 위한 필수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	〈비 고〉위 내용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른다.

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현행 설치기준으로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상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바닥면적,흙,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조정한다.
12. 경형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면수는 전체 주차면수의 10퍼센트까지만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한 주차면수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13. 다음 각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은 이를 철거하여 다음 각목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자주식 또는 기계식주차장으로 대체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1대를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인정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시설물로서 다른형식의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대수보다 2분의 1을 적게 설치해도 기존 대수로 본다.
 - 가. 2단 경사식(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나. 2단 수동식(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다. 단순승강식(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14. 기계식주차장중 수동식은 2007년 12월 1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주차면수로 산정한다.
15.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 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